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23-2

제출연월일: 2023년 1월 일

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2020. 12. 22.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
- "주관부서" 정의 추가

나. 정보공개 주체 정비(안 제4조, 안 제5조)

- 정보공개주체 : 구청장 ⇒ 집행기관의 장

다. 행정정보공표 용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(안 제5조)

- 용어 수정 : 행정정보의 공표 ⇒ 정보의 사전적 공개

라.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0조)

-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비율 확대

: 7명 중 위촉직 4명 ⇒ 5명

마.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비율 규정 명시

-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입법예고(2022. 11. 30. ~ 12. 20.): 의견없음
2) 기획예산과: 규제심사(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3) 감사담당관: 부패영향평가(원안동의)
4) 가족정책과: 성별영향평가(개선사항 없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주관부서”란 다중부서 처리 시 정보공개처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집행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행정정보의 공표)”를 “(정보의 사전적 공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집행기관”을 “집행기관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집행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”구청장“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, 민원여권과장,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”을 “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, 민원여권과장으로 하며, 위원중 3분의 2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담당주사”를 “팀장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분

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“주관부서”란 다중부서 처리시 정보공개처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제4조(집행기관의 의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·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4조(집행기관의 의무) ① 집행기관의 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·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3. (생 략) 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	제5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) ① 집행기관의 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집행기관의 장------

보 ② (생 략) 제10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·구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 ②·③ (생 략)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, 민원여권과장,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 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 <신 설>	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·구성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-----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, 민원여권과장으로하며, 위원중 3분의 2는 ----------. ⑤ ---------- 팀장으-------. ⑥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붙임 | **관계법령**

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2. 23.] [법률 제17690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[제목개정 2020. 12. 22.]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

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21. 12. 23.] 제12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제4항